

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서

(의안번호 제 1122호)

□ 의안번호 제1122호 「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
□ 본 개정안은

- 지난 7.25자 조직개편으로 마을공동체 관련 업무가 서울민주주의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, 마을공동체 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직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- 조직개편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제15조 제3항 중 “혁신 분야 관련 국장”을 “마을공동체 관련 실·본부·국장 및 합의제 행정기관의 장”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.

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
감사하겠습니다.

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2019. 11. 25.

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 오 관 영